

타행 자동이체 약관

2015.4.1 제정

제1조(약관의 적용)

타행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신청, 변경 및 해지)

- ① 거래처가 타행 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행 자동이체(신규, 변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타행 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금일 전 제1영업일까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 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지시의 철회로 봅니다.

제3조(타행 자동이체 방법)

저축은행은 거래처의 타행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 청구서 제출 등 별도 청구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이하 “입금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로 입금합니다.

제4조(입금가능 예금종목)

입금계좌는 당좌, 가계당좌,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거래처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5조(출금)

저축은행은 거래처 출금계좌에서 지정일(거래처가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에 출금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6조(거래불능 및 면책)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이체금액과 이체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미결제타점권(자기앞수표 포함)은 인출가능금액에서 제외] 및 기타 거래처의 귀책사유(수취계좌 부재,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 지급제한, 해약 등)로 출금 또는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처리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거래처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

출금계좌에서 같은 날 여러 건(카드대금결제, 어음수표대금결제, 타 자동이체 등)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2. ()
3. ()
4. ()
- ⋮

제8조(입금 불능시의 처리)

입금계좌 부재(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제한,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

제9조(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는 건당 ()원으로 하며, 이체금액 출금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제10조(약관의 변경)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로 고객에게 알립니다. 또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게시 합니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안에 거래처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관련예금 약관을 준용합니다.